

1. 개정 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에 필요한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 확대 (안 제5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포함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
(안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지 제11호서식)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주요사항,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 등을 명시

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4조제7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라. 타 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30. ~ 7.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12조의 제목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영 제34조제3호나목”을 “영 제3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6.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⑦ 법 제63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벤처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 구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금 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명부 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생략)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① (생략)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② ----- -----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
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영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
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
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 9. (생략)

③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영 제34조제1항제3호나목 또
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
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6.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⑤ -----
 ---- 제3항(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4항)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법 제63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⑧ ----- 제7항-----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